<bof>

1. [%1](#1 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2 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3 Points to note when filing corporate tax for 2023)[n]
   1. [%2](#1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2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3 Interpretations and legal precedents to note when filing corporate tax)[n]
      1. [1](#1 특수관계자 거래)(#2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3 Transactions with individuals specified in tax law as having a special relationship) [n]
         1. [2](#1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 2. 10)(#2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 2. 10)(#3 Changwon District Court-2021-Guhap-51605, February 10, 2022) [n]
            1. {1}(#1 증여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한 금전으로 주식발행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2 주식을 증여한 자가 주식을 직접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율보다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주식을 받은 자를 끼워 넣은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자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후 대금을 회수하여 주식발행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거래인 것으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함)(#3 The act of formally inserting an intermediary who receives the stocks in between, when assuming that the giver of the stocks sold them directly, is done in order to avoid being subject to a higher income tax rate than the gift tax rate by treating it as a dividend under tax law. In reality, this transaction involves the giver of the stocks transferring the stocks to the corporation that issued them, then receiving payment and repaying the borrowed money from the stock-issuing corporation. Therefore, the income should be calculated and taxed as a dividend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r5<n>}
         2. [3](#1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 10. 27)(#2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 10. 27)(#3 Changwon District Court-2022-Guhap-50241, October 27, 2022) [n]
            1. {1}(#1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건과 관련하여 쟁점특허권은 그 내용상 원고 내 설비 및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직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 내 기술인력 및 설비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대표자 개인이 단독으로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2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대표자가 해당 특허권을 법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대표이사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상계하여 처리한 것은 그 특허권이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법인 내 기술인력 및 설비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대표자 개인이 단독으로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3 Registering a patent owned by the corporation in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and then having the representative transfer the patent to the corporation under the disguise of receiving consideration, which is offset against the debt that the CEO should pay to the company, makes it difficult to consider the patent as an invention completed solely by the CEO's idea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corporation's internal technical resources and equipment situation mentioned earlier,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CEO alone made the invention.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support this claim.) {r5<n>}
         3. [4](#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330, August 24, 2022) [n]
            1. {1}(#1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2 세법에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돈을 빌린 날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돈을 빌린 법인의 세법 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3 In cases where money is borrowed through transactions with individuals or entities specified in tax laws as having a special relationship, and the period from the date of borrowing to the interest payment date exceeds one year, and interest is paid in the annual basis, any unpaid interest that has elapsed for one year is treated as an expense for the borrowing corporation under tax laws.) {r5<n>,r8<n>}
         4. [5](#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 8. 3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 8. 31)(#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350, August 31, 2022) [n]
            1. {1}(#1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2 부당하게 세법 상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의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3 The point in time for judging acts that unjustly reduce profits under tax law is "at the time of the act," which means the point in time when the main transaction conditions are determined, and there is a bind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2<n>,r3<n>,r4<n>}
         5. [6](#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 10. 2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 10. 20)(#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445, October 20, 2022) [n]
            1. {1}(#1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2 3년간 계속 적자인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3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that has been in continuous deficit for 3 years and trades its shares using methods such as off-hours bulk trading, if there is a transfer of control,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shares is the final market price (without adjustment).){r7<n>,r11<n>}
         6. [7](#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2021. 11. 30)(#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2021. 11. 30)(#3 Preliminary-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652, November 30, 2021) [n]
            1. {1}(#1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2 국내의 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 거래한 가격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3 If there is a valid reason for a domestic corporation to sell shares at a price lower than the fair market value, the pro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that conside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ir market value and the transaction price as a donation does not apply.) {r6<n>,r11<n>}
         7. [8](#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2021. 11. 18)(#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2021. 11. 18)(#3 Written Opinion-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5902, November 18, 2021) [n]
            1.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2 관련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내의 법인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하여 세법에 정한 특별한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자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3 Amounts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considered a public entity under the relevant law,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no special relationship specified in tax law for the purpose of mutual growth, which is lent to financial institutions at a low interest rate, are treated as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r4<n>}
         8. [9](#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 2021. 11. 4)(#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 2021. 11. 4)(#3 Preliminary-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514, November 4, 2021) [n]
            1. {1}(#1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2 국내의 법인이 시장 가치가 불분명한 유형의 자산을 판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제3자간 거래할 때의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3 If a domestic corporation sells assets with an uncertain market value, the appraisal value by an appraisal expert can be considered the fair market value, but if the appraisal value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appropriate value for third-party transactions, it cannot be considered as the fair market value.) {r10<n>,r11<n>}
         9. [10](#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 10. 15)(#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 10. 15)(#3 Preliminary-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283, October 15, 2021) [n]
            1. {1}(#1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2 국내의 법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장부에 기록한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지 않음)(#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accounts for an outstanding receivable as a loss recovery claim and is unable to exercise its recovery rights, i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recovery claims arising from debt guarantees.) {r11<n>,r9<n>}
         10. [11](#1 대법원2016두54213, 2019. 5. 30)(#2 대법원2016두54213, 2019. 5. 30)(#3 Supreme Court 2016Du54213, May 30, 2019) [n]
             1. {1}(#1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로 팔고 그 대금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 없는 이 사건 이사들이 수령한 대금은 법인이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나눠준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하게 세법 상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봄)(#3 When a corporation, along with its directors, sells the corporation's stocks and management rights collectively, distributing the proceeds according to the ratio of shares, the proceeds received by the directors unrelated to the management premium are considered as a division of some of the management premium that the corporation should have received, viewed as an act of reducing income unfairl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r6<n>,r7<n>}
      2. [12](#1 업무용승용차)(#2 법인의 차량)(#3 Corporate vehicles) [n]
         1. [1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 9. 29)(#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 9. 29)(#3 Preliminary-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213, September 29, 2021) [n]
            1. {1}(#1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2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자를 접대하기 위해 쓴 비용으로서 세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됨)(#3 When a corporation provides a company vehicle covered by an employee's auto insurance policy to dispatched employees for the purpose of smooth business operation, the portion of money not used for business purposes is not recognized as an expense under tax law, and expenses incurred for using the company vehicle for business purposes are only recognized within the limits specified by tax law.){r16<n>,r17<n>}
         2. [14](#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 10. 19)(#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 10. 19)(#3 Preliminary-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295, October 19, 2020) [n]
            1. {1}(#1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2 회사가 빌려서 쓰던 차량을 연중에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차량의 가치 감소분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되어 다음 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법 상 비용으로 보는 것임)(#3 If a company purchases a vehicle during the year that was previously rented and used, any amount exceeding the range recognized by tax law for depreciation of the vehicle is carried forward and treated as an expense from the following year, subject to an annual limit of KRW 8 million according to tax law.) {r15<n>}
         3. [15](#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 6. 12)(#2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 6. 12)(#3 Written Opinion-2019-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435, June 12, 2020) [n]
            1. {1}(#1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장부에 나타낼 때 차량의 구매가액에서 동 국고보조금 만큼을 차감하는 경우 차량 가액에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 세법에 정한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 차량의 가치가 감소된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차량의 가치가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은 세법상 비용에서 불인정하는 것임)(#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purchases a vehicle for business purposes and records the received government subsidy in the company's books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Tax Act and related regulations, the corporation first calculates the decrease in the value of the business vehicle based on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tax laws. In this case, the por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 corresponding to the decrease in the value of the business vehicle, recognized as an expens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not recognized as an expense for tax purposes.) {r14<n>}
         4. [16](#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 9. 26)(#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 9. 26)(#3 Written Opinion-2017-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698, September 26, 2017) [n]
            1. {1}(#1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 차량을 빌리는 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해당 차량이 법인세법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함)(#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enters into a joint vehicle rental agreement with another corporation through a contract with an automobile rental service provider and pays monthly lease fees divided between them, if the vehicle is insured as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portion of the lease fees paid by the corporation, multiplied by the percentage used for business purposes, is treated as an expense for tax purposes under the tax law.) {r13<n>}
         5. [17](#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 6. 28)(#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 6. 28)(#3 Written Opinion-2016-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5680, June 28, 2017) [n]
            1. {1}(#1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2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의 가입 대상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3 If executives are insured as both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party in automobile insurance, it cannot be considered as having insurance coverage for automobiles a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r13<n>,r16<n>}
      3. [18](#1 사적 경비)(#2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3 Personal expenses) [n]
         1. [19](#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2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3 Written Opinion-2019-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951, April 23, 2020) [n]
            1. {1}(#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2 국내의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실물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receives credit card sales receipts, it can be considered that proper expenditure proof documents have been preserved, and physical documents need not be kept separately. However, in cases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uses scraping technology to collect transaction information from credit card companies and stores the original credit card sales receipt along with it on its own server, it must still retain the original credit card sales receipt.) {n}
         2. [20](#1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2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3 Written Opinion-2019-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237, September 18, 2019) [n]
            1. {1}(#1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관련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incurs expenses related to business and pays them using an employee's personal credit card, receiving credit card sales receipts, and not receiving transaction information from the credit card company as a credit card issuer under relevant laws, it must retain expenditure proof documents.) {r19<n>}
         3. [21](#1 서면-2018-법인-3221, 2019. 8. 1)(#2 서면-2018-법인-3221, 2019. 8. 1)(#3 Written Opinion-2018-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3221, August 1, 2019) [n]
            1. {1}(#1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 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쓴 비용을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으로 개별 법인에게 나누어 쓴 비용을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돈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액으로 보지 않음)(#3 The act of representing multiple corporations to pay the expenses incurred for performing common tasks, and reasonably distributing the expenses to individual corporations after payment, is not considered as revenue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r19<n>}
      4. [22](#1 법인 가수금)(#2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빌려준 돈)(#3 Money lent by a representative director, etc., to a corporation) [n]
         1. [23](#1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195, 2021. 9. 2)(#2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195, 2021. 9. 2)(#3 Incheon District Court - 2019-Guhap-54195, September 2, 2021) [n]
            1. {1}(#1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2 국세청의 실제 조사로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소득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3 In cases where the National Tax Service determines the taxable income and tax amount of the taxpayer through an actual investigation, even if omitted sales revenue is discovered from the taxpayer's initial declaration, the expenses corresponding to that sales revenue should be considered as declar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revealed by accounting and other supporting documents regarding separate expenditures.) {r24<n>}
         2. [24](#1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2018. 12. 26)(#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2018. 12. 26)(#3 Precedent-2018-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760, December 26, 2018) [n]
            1. {1}(#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법인 보유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2 주택을 새로 지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돈을 법인 보유 미분양아파트로 대신 갚으면서 제공한 아파트의 시장 가치가 법인이 빌린 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과세대상 소득에 더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그 대신하여 받은 자산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장부에 기록할 때 당초 회사에 빌려준 금액으로 기록한 경우, 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면서 생긴 손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3 If a domestic corporati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building and selling houses borrows money from the individual proprietor CEO and repays it by providing an apartment that exceeds the corporation's borrowed amount in market value, and if it does not recognize the resulting loss as an expense for tax purposes when adding it to taxable income, the tax authorities do not subject the CEO, who directly benefited from the loss incurred by repaying the money borrowed from the CEO, to additional income tax when the CEO records the assets received on behalf in the books of his business operation initially as the amount lent to the company.){r23<n>}
      5. [25](#1 법인세법상 손금)(#2 법인세법상 비용)(#3 Corporate tax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n]
         1. [26](#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 10. 26)(#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 10. 26)(#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447, October 26, 2022) [n]
            1. {1}(#1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2 국내의 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재산을 사거나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3 If the donation made by a domestic corporation to a school corporation is actually used for facility expenses, education expenses, scholarships, or research expenses of a private school, it qualifies as a don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the amount used by the school corporation to acquire property or for personnel and management expenses of the school corporation to generate income does not qualify as a don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r27<n>}
         2. [27](#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 10. 2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 10. 20)(#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443, October 20, 2022) [n]
            1. {1}(#1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판결 전 소송을 하는 사람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3 The settlement amount paid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between parties involved in civil litigation or other disputes before the court judgment is not considered as "damages paid under foreign law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r26<n>}
         3. [28](#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 12. 30)(#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 12. 30)(#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634, December 30, 2021) [n]
            1. {1}(#1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2 주식발행법인이 적자로 인한 재무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없애고 이와 동시에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로서 기존지분율에 따라 투자에 참여한 법인은 회사가 발행주식 전량을 없애기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투자에 참여하여 산 주식의 가격에 포함함)(#3 In the case where a stock-issuing corporation eliminates all issued shares and simultaneously secures capital by receiving investments from third parties to improve its financial condition due to deficits, and the corporation that participated in the investment according to the existing ownership ratio includes the book value of the shares at the time of eliminating all issued shares in the investment price.) {r30<n>,r35<n>}
         4. [29](#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 12. 3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 12. 30)(#3 Written Opinion-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6997, December 30, 2021) [n]
            1. {1}(#1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2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국내의 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그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작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3 In the event of a dispute arising between a domestic corporation engaged in the sam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rporation") and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legal disputes are settled according to mutual agreement, and A Corporation pays a settlement f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ute settlement fee") to B Corporation, if the dispute settlement fee falls under "damages paid under foreign law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even if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incurred is not definitively determined by a court judgment or equivalent institution's decision, and it is unclear due to the process and terms of the settlement, it may not be subject to the provision in the tax law that does not recognize it as an expense, especially if considering all the factors in the settlement process and its content suggests that the settlement amount is lower than the actual damages. However, whether your specific case falls under this category would require a factual determination.){n}
         5. [30](#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2021. 12. 1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2021. 12. 10)(#3 Written Opinion-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819, December 10, 2021) [n]
            1. {1}(#1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임)(#2 외화로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그 기부가액을 계산함)(#3 When issuing a donation receipt for a donation made in foreign currency, the exchange rate to be applied is determined by the exchange rate specifie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o calculate the donation amount.) {r28<n>,r35<n>}
         6. [3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 12. 7)(#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 12. 7)(#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632, December 7, 2021) [n]
            1.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관련법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며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세법에 따른 연구 및 인력에 투자한 기업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3 The amount borne by a company due to the company's participation in the Youth Tomorrow Employment Support provided under the relevant laws, as required by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recognized as an expens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amount borne by the company is eligible for tax benefits applied to companies investing in research and personnel under the tax laws.) {r33<n>}
         7. [3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 10. 27)(#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 10. 27)(#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372, October 27, 2021) [n]
            1. {1}(#1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2 해외의 투자법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업장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모든 재산이 매각되어 주주 등에게 회사의 재산을 나눠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나, 그 사업을 정리하는 이유가 사실상 주식의 가치를 낮추어 그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3 When an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sells all the assets of its business during the process of liquidation, even if it is expected that the value of the corporation's shares will decrease, the day when all the assets are sold and distributed to shareholders falls within the business year and is recognized as an expense. However,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reason for liquidating the business is essentially to reduce the value of the shares held by the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taxable income of the corporation, it will not be recognized as an expense immediately.) {r34<n>,r33<n>}
         8. [3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 5. 25)(#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 5. 25)(#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218, May 25, 2021) [n]
            1. {1}(#1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2 법인세법상 돈 받을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후 세법상 돈 받을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할 수 있음)(#3 If the right to receive money is not considered to have been los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t cannot be recognized as an expense. However, if it is later recognized that the right to receive money has been lost, the loss amount can be deducted from taxable income when filing corporate taxes after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reason for the loss occurred.) {r31<n>}
         9. [34](#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 3. 4)(#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 3. 4)(#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130, March 4, 2021) [n]
            1. {1}(#1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 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2 하나의 실체로 연결되어 장부를 작성하는 법인 간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법상 그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나중에 인식하도록 한 후 그 거래한 주식이 소멸되는 것은 나중에 인식하도록 한 손실을 지금 인식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함)(#3 When corporations buy and sell shares between corporations that are consolidated into one entity and recognize the losses from the transactions later, it is considered as a reason to recognize the losses now.) {r32<n>,r33<n>}
         10. [35](#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 9. 4)(#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 9. 4)(#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1204, September 4, 2020) [n]
             1. {1}(#1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2 국내의 법인이 임직원의 자사 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장 가치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장 가치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issues shares at a lower value than the market value due to the exercise of rights granted to purchase company shares by employees, the amount recognized as an expense for the corporation is the full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value at the time of exercise and the exercise price.){r8<n>,r30<n>}
      6. [36](#1 부동산 양도차익)(#2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3 Profit obtained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n]
         1. [37](#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330, August 24, 2022) [n]
            1. {1}(#1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2 어떤 법인으로부터 분할되어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2010년에 분할전의 법인으로부터 이전된 토지를 파는 경우 토지를 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3 In the case where a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resulting from a split from another corporation sells land transferred from the original corporation before the split in 2010, no additional corporate tax is imposed on the profit from selling the land.) {r38<n>,r39<n>}
         2. [38](#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 10. 27)(#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 10. 27)(#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079, October 27, 2021) [n]
            1. {1}(#1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딸린 토지만을 매입하여 파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 중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purchases only the land attached to a house owned by a third party and sells it, it is not considered as selling a hous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for the portion of the land attached to the house that exceeds the area recognize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dditional tax must be paid on the profit from selling that land.) { r37<n>,r39<n>}
         3. [39](#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2021. 10. 19)(#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2021. 10. 19)(#3 Written Opinion-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6001, October 19, 2021) [n]
            1.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사. 합병･분할)(#2 관련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는 자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그 특별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2년이 지나서 파는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3 In accordance with special regional development plans that grant tax benefits or regulatory relaxations to attract overseas capital and technology actively, if a person engaged in development projects under related laws sells land within the special region more than two years after obtaining the right to use the land, the two-year period from the date when the land can be used is not considered as the period used for the project.) { r37<n>,r38<n>}
      7. [40](#1 합병∙분할)(#2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거나 하나의 회사가 두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3 The process of two companies merging into one company or one company splitting into two companies)[n]
         1. [40x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 2. 22.)(#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 2. 22.)(#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105, February 22, 2022) [n]
            1. {1}(#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된 회사가 하던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기존 인수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인수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3 In the process of two companies merging into one company, if the company acquiring another company replaces the assets held by the acquired company with the latest specifications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business previously conducted by the acquired company, it is not considered as the dissolution of the acquired business as prescribed by the tax laws.) {r41<n>,r42<n>,r47<n>}
         2. [4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 12. 28)(#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 12. 28)(#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575, December 28, 2021) [n]
            1. {1}(#1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2 국내의 법인(‘다른 회사를 인수한 법인’)이 법인세법 상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한 경우로서 회사를 합칠 당시에 발생한 이익을 회사의 자본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금액을 상법에 따라 배당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회사를 인수한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고, 회사가 자본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미리 빼 둔 이익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이익으로 보는 금액을 먼저 뺀 것으로 봄)(#3 In the case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referred to as the "acquiring corporation") acquires a company in a manner that allows it to receive various tax benefi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pays out the profits earned at the time of the merger as dividend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the amount is not considered as taxable income of the acquiring corporation. However, when the corporation pays out profits in advance as dividends for reinvestment as capital, it is regarded as the amount first deducted under the Corporate Tax Act.){r40x1<n>}
         3. [4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 2021. 11. 29)(#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 2021. 11. 29)(#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462, November 29, 2021) [n]
            1. {1}(#1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2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경우로서 기존 회사의 재산을 쪼개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나눠준 경우 그 주식은 쪼개진 회사의 재산의 시장 가치로 산 것으로 봄)(#3 When splitting one company into two or more compan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qualify for tax benefits under tax laws, and when the existing company's assets are divided to establish new companies, and the shares of the new company are distributed to the shareholders of the existing company in proportion to their shareholding, the share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acquired at the market value of the assets of the divided company.) {r40x1<n>,r43<n>}
         4. [4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 2021. 10. 27)(#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 2021. 10. 27)(#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441, October 27, 2021) [n]
            1. {1}(#1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를 지배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든 후 같은 날 분리 전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인수되는 경우, 법인세법 상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인수 방식 요건 중 인수되는 회사의 직원을 그대로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두 회사가 합쳐진 것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날 1개월 전 당시 인수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두 회사가 합쳐진 것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날 1개월 전 당시 해당 국내 법인의 사업부분 중 인수한 회사에 합쳐지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by owning shares, separates all business sectors except those that dominate or manage the stock company and creates a new company, and on the same day, the pre-split company is acquired by another company,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ndition of retaining the employees of the acquired company as part of various tax benefi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met, the term "employees working for the acquired company at the time one month before the date when the two companies legally merged" refers to employees working for the business segment of the domestic corporation that is being merged into the acquired company at the time one month before the date when the two companies legally merged.) {r42<n>}
         5. [44](#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 8. 24)(#2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 8. 24)(#3 Written Opinion-2019-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3689, August 24, 2021) [n]
            1. {1}(#1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2 법인이 그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법인을 인수하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없애면서 회사의 이익 누적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살 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식으로 장부에 기록했던 금액은 그 주식이 장부에서 제거되는 때 과세대상 소득으로 봄)(#3 If a corporation acquires a corporation by owning 50% or more of its shares and, while eliminating the shares of that company, the cumulative profits of the company increase, the amount recorded as an expense in the books when the shares were originally acquired without corporate tax being assessed is treated as taxable income when the shares are removed from the books.) {r46<n>}
         6. [45](#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672, 2021. 6. 21)(#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672, 2021. 6. 21)(#3 Written Opinion-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672, June 21, 2021) [n]
            1. {1}(#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2 국내의 법인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를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가 되어 기존 회사의 재산을 쪼개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존 회사를 나누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을 때 그 법인이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기존 회사와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by owning shares, becomes a company that dominates or manages a stock company and splits the assets of the existing company to create a new company, and when the existing company is divided to establish a new corporation by distributing shares of the new company in proportion to the ownership of shares by the existing company's shareholders, if the new corporation has a separate organization and can independently carry out its business operations from the existing company, it can be considered as "splitting an independent business segment." However, this is a matter that requires a factual determination.) {r43<n>}
         7. [46](#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2020. 11. 16)(#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2020. 11. 16)(#3 Written Opinion-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949, November 16, 2020) [n]
            1. {1}(#1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2 A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에 따라 나누어 새로운 B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게 된 경우로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자산을 매도하면서 얻은 이익을 A법인의 장부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한 후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산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나누어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B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를 나누어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당초 B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식으로 장부에 기록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음)(#3 In the case where Corporation A divides various business sectors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Act to establish a new Corporation B and Corporation B, after purchasing assets from Corporation A, divides one business sector that accounts for less than 50% of the purchase price into Corporation C, if Corporation B divides the business as a method to receive tax benefi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erminates the business, the amount originally recorded in the books of Corporation B in a manner that was not subject to corporate tax when Corporation A sold the assets is not regarded as taxable incom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when Corporation B divides the business.){n}
         8. [47](#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2020. 3. 2)(#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2020. 3. 2)(#3 Precedent-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139, March 2, 2020) [n]
            1.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2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법인이 연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법인을 인수한 경우, 인수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매출액을 따질 때 해당 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3 In the case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engaged in manufacturing acquires a domestic corporation engaged in retailing throughout the yea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acquiring corporation qualifies as a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the total sales amount for the current year is used as the basis for examining the entire sales amount for the year. However, this interpretation case applies from those who file and pay taxes starting from September 4, 2019 (Reference: 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527, September 4, 2019).) {r40x1<n>}
      8. [48](#1 공동경비 및 가산세)(#2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쓰는 비용 및 가산세)(#3 Shared expenses by multiple corporations and additional taxes) [n]
         1. [49](#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2021. 3. 17)(#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2021. 3. 17)(#3 Precedent-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905, March 17, 2021) [n]
            1. {1}(#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2 귀 과세 전 질의를 통해 국세청의 직접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의 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다른 국내의 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본금 투자 없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으로 쓴 경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것임)(#3 In cases where the person requesting a direct response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rough this tax query is related to a domestic corporation that, in order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auto finance, jointly operates a consolidated platform related to auto finance with other domestic corporations that have a special relationship as defined by tax law, and where all corporations jointly bear expenses related to the consolidated platform, the expenses shared jointly by all corporations involved in the consolidated platform, pursuant to the Corporate Tax Act, are divided by the ratio of the sales amount (or total asset amount if selected by the corporation) of each corporation to the total sales amount or total asset amount of the current year or the previous business year, as chosen by the corporation. However, advertising expenses related to the consolidated platform should be shared based on the sales amount generated through the consolidated platform as stipulated in the Corporate Tax Act.) {n}
         2. [50](#1 서면-2019-법인-4570, 2020. 3. 13)(#2 서면-2019-법인-4570, 2020. 3. 13)(#3 Written Opinion-2019-Corporation-4570, March 13, 2020) [n]
            1. {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법인과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쓴 비용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시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jointly engages in business without investing capital with other corporations that have a special relationship as defined by tax law, and all corporations jointly bear expenses related to the business, the amount shared jointly by all corporations involved in the busines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ratio of the sales amount of the respective corporation to the total sales amount, or the total asset amount, as chosen by the corporation, for the current year or the previous business year as stipulated in the Corporate Tax Act.) {r49<n>}
         3. [51](#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2020. 1. 9)(#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2020. 1. 9)(#3 Precedent-2019-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680, January 9, 2020) [n]
            1. {1}(#1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2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겸 다른 회사의 직무도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3 If the amounts paid to an executive who concurrently holds another company's duties, as stipulated in the compensation agreement, a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the regular compensation for executives, they can be recognized as expenses under tax laws.){r49<n>}
         4. [52](#1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91, 2021. 10. 27)(#2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91, 2021. 10. 27)(#3 Basis-2021-Legislation Interpretation Basic-0191, October 27, 2021) [n]
            1. {1}(#1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2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국내의 법인이 토지를 판 이익을 법인세에 더하여 추가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법인세 신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토지를 판 이익을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됨)(#3 (After the amendment by Law No. 12848 on December 23, 2014) If a domestic corporation, when selling land, does not file or files less than the amount that should be filed, even if corporate tax has been filed, penalty tax is imposed on the lesser filed amount for corporate tax.) {r54<n>}
         5. [53](#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 7. 16)(#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 7. 16)(#3 Written Opinion-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3709, July 16, 2021) [n]
            1. {1}(#1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2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부금 단체의 분리된 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리된 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적절하지 않게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됨)(#3 Organizations eligible for tax-deductible donation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cannot issue donation receipts in the name of separate branches, and donation receipts issued in the name of separate branches are considered improperly issued, making them subject to penalty tax.) {r54<n>}
         6. [54](#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 2. 1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 2. 11)(#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235, February 11, 2020) [n]
            1.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삭제 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1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2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의 계산 시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서 빼야 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임)(#3 When calculating corporate tax on the amount of income earned by a company that has not been spent, the "corporate tax amount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to be subtracted from the unspent amount refers only to the corporate tax amount imposed on income generated in the relevant business year. Other amounts such as corporate tax refunds or additional payments for different business years are not added or subtracted from the "corporate tax amount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r52<n>}
      9. [55](#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2 세법상 적자금액 및 이월된 누적 적자금액)(#3 Deficit amount and accumulated deficit carried forward under the tax law) [n]
         1. [56](#1 서면-2022-법인-2191, 2022. 08. 16)(#2 서면-2022-법인-2191, 2022. 08. 16)(#3 Written Opinion-2022-Corporation-2191, August 16, 2022) [n]
            1. {1}(#1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2 법인세법 상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인수된 기업의 세법상 누적 적자금액은 자산을 인수법인에게 팔고 얻은 이익에서 공제되므로, 형평성 있는 과세를 위해 인수된 기업이 가지고 있던 세법상 누적 적자금액 중 자산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한 법인의 소득에서 빼는 것이 타당)(#3 The cumulative deficit amount for tax purposes of a company acquired in a manner that does not qualify for various tax benefi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deducted from the profit obtained from selling assets to the acquiring corporation. To ensure fairness in taxation, it is reasonable to subtract the amount from the acquired company's cumulative deficit that corresponds to the profit obtained from selling assets when calculating the income of the acquiring corporation.) {r57<n>,r58<n>}
         2. [57](#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 08. 16)(#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 08. 16)(#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 Division-285, August 16, 2022) [n]
            1. {1}(#1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2 법인세법 상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한 법인은 법적으로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인수된 기업의 적자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에서 뺄 수 있는 기한이 지난 금액은 인수할 수 없음)(#3 When a company that has acquired another company in a manner that qualifies for various tax benefits attempts to deduct from taxable income the amount of accumulated deficit of the acquired company for which the deadline has passed, it cannot be deducted.) {r56<n>,r58<n>}
         3. [58](#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2021. 3. 23)(#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2021. 3. 23)(#3 Precedent-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1292, March 23, 2021) [n]
            1. {1}(#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2 인수된 법인이 인수될 때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은 그 인수된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법인을 인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인수한 법인에서 발생한 세법상 적자금액이 있다면 과세대상 소득에서 뺄 수 있음)(#3 When an acquired company sells assets and generates profit at the time of acquisition, the profit corresponds to income generated by the acquired company's business. If the legally registered date of the acquisition falls within the business year, the accumulated deficit of the acquired company that was acquired on the same day can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income of the acquiring company.){r56<n>,r57<n>}
      10. [59](#1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2 조세의 특례를 적용하는 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3 Special deduction or exemption amounts under laws applying special taxation rules) [n]
          1. [60](#1 서면-2022-법인-4398, 2022. 11. 17)(#2 서면-2022-법인-4398, 2022. 11. 17)(#3 Written Opinion-2022-Corporation-4398, November 17, 2022) [n]
             1. {1}(#1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을 감면 받고 있다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남은 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3 Even if a young entrepreneur, who received a 50% or 100% tax reduction for five years for starting a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later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as a young representative and establishes a new corporation with the same industry as the previous corporation after the remaining tax reduction is discontinued, the new corporation will not be considered a young start-up unless it involves the succession or expansion of the business.) {r69<n>,r79<n>}
          2. [61](#1 서면-2022-법인-2973, 2022. 11. 21)(#2 서면-2022-법인-2973, 2022. 11. 21)(#3 Written Opinion-2022-Corporation-2973, November 21, 2022) [n]
             1.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2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서 규정한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해당 법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를 의미하는 것임)(#3 The term "taxable year in which the relevant investment is made" as defined in the law that specifies tax reductions or surcharges refers to the year in which an investmen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at law is made.) {r70<n>,r88<n>}
          3. [62](#1 서면-2022-법인-1041, 2022. 12. 06)(#2 서면-2022-법인-1041, 2022. 12. 06)(#3 Written Opinion-2022-Corporation-1041, December 6, 2022) [n]
             1.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됨)(#2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관련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됨)(#3 In the law that stipulates tax reductions or surcharg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 entities, the scope of eligible income for reduction (excluding non-farmers controlling agricultural corporate entities, such as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and service businesses, with the exception of crop cultivation-related services) does not include income generated from handling livestock waste disposal on behalf of livestock farmers. However, income generated from the production or sale of fertilizer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s included.) {r63<n>}
          4. [63](#1 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 1. 20)(#2 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 1. 20)(#3 Written Opinion-2021-Legal Corporate-4605, January 20, 2022) [n]
             1. {1}(#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2 부동산을 판매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으로서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판매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동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각 동업자의 손익을 나누어 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대로 나누어 줌)(#3 As an enterprise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real estate as its primary activity and applying a system that does not tax the joint ventures but taxes each of the joint venturers separately, when income is generated from the sale of land not used in the business, the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for the enterprise's joint venturers. If the joint venturer is a corporation, it is subject to the Corporate Tax Act, and if the joint venturer is an individual, it is subject to the Income Tax Act. The profits and losses are divided among the joint venturers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ratio agreed upon in advance.) {r62<n>}
          5. [64](#1 서면-2022-법인-1043, 2022. 3. 16)(#2 서면-2022-법인-1043, 2022. 3. 16)(#3 Written Opinion-2022-Corporation-1043, March 16, 2022) [n]
             1. {1}(#1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2 세법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3 If a business does not start as a business that qualifies for tax reduction under tax laws, it cannot receive tax reductions.) {r60<n>}
          6. [65](#1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 5 .26)(#2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 5 .26)(#3 Written Opinion-2021-Legal Corporate-4819, May 26, 2022) [n]
             1. {1}(#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2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서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3 When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qualifies as a mid-sized enterprise under laws that specify tax reductions or surcharges, foreign governments ar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foreign corporations.){r73<n>}
          7. [66](#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 8. 18)(#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 8. 18)(#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pecial Taxation Division-559, August 18, 2021) [n]
             1. {1}(#1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 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연도 및 그 다음 3개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3 If the criteria for considering a business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re revised according to relevant laws before the standards that used to classify it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he business will be considered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for the year in which it is no longer classified as such and for the following three years.) {r69<n>}
          8. [67](#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 6. 1)(#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 6. 1)(#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pecial Taxation Division-417, June 1, 2021) [n]
             1.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 한 후,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기업이 아니게 된 연도 및 그 다음 3개년이 되는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3 Even if an individual business owner, who met the criteria for a small business according to tax laws, transitions to a corporate business owner after January 1, 2016, and subsequently no longer meets the criteria for a small business due to changes in tax laws, the business will still be considered a small business until the year 2019 and the following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ax laws) {r69<n>,r76<n>}
          9. [68](#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 3. 30)(#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 3. 30)(#3 Precedent-2021-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366, March 30, 2021) [n]
             1. {1}(#1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건강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법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3 If a domestic corporation has not paid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for Korean employees over the age of 60,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corporation is responsible for paying other social insurance premiums, such as health insurance premiums, on behalf of the employees, the corporation can claim a tax deduction for the social insurance premiums paid by the company for the employees.) {r73<n>}
          10. [69](#1 서면-2020-법인-5698, 2021. 3. 15)(#2 서면-2020-법인-5698, 2021. 3. 15)(#3 Written Opinion-2020-Corporation-5698, March 15, 2021) [n]
              1. {1}(#1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2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연도 및 그 다음 3개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3 If a corporation founded in 2020 no longer meets the criteria for being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ccording to relevant laws, starting from the year in which it is no longer considered as such and for the following three years, it will not be eligible for tax reductions or surcharges that are based on being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r60<n>,r66<n>,r67<n>}
          11. [70](#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 1. 7)(#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 1. 7)(#3 Written Opinion-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3626, January 7, 2021) [n]
              1. {1}(#1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3 If a domestic corporation receives various support funds from the government for purposes of increasing employments other than research and development or personnel development, and then uses these funds to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or personnel development expenses, the expens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r personnel development covered by these funds are not eligible for tax deductions.){r61<n>,r77<n>}
          12. [71](#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 9. 29)(#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 9. 29)(#3 Precedent-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561, September 29, 2020) [n]
              1. {1}(#1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2 개인사업자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날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3 If an individual business owner transitions to a corporate business owner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s set by the law and if the transition occur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starting the individual business, even if the individual business owner is recognized as a venture busines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the tax reduction system for establishing a venture business will not apply.) {r74<n>}
          13. [72](#1 서면-2018-법인-3405, 2020. 9. 28)(#2 서면-2018-법인-3405, 2020. 9. 28)(#3 Written Opinion-2018-Corporation-3405, September 28, 2020) [n]
              1. {1}(#1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2 법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총자산 및 구매한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인구와 산업이 도시지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도시지역 내에 있다면 이는 도시지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3 When a corporation starts both businesses that are eligible for tax reductions and those that are not, it must differentiate and record them separately in the books. The determination is based on the total assets and the assets purchased for businesses that qualify for tax reductions. If the corporation's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within the urban area, even if the population and industry are not in the urban area, it is considered to have started the business in the urban area.) {r75<n>}
          14. [73](#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 9. 28)(#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 9. 28)(#3 Written Opinion-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487, September 28, 2020) [n]
              1.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2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국내의 법인이 해당 연도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에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다음 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등의 법에 정한 적게 납부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그 후 2년 뒤의 법인세까지 적게 납부할 수 있는 것임)(#3 A domestic corporation classified as a mid-sized enterprise according to the tax law provisions governing tax reductions or surcharges can benefit from reduced tax payments if, in a given year, the number of employees working permanently for the company increas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s long as they continue to meet the conditions for such tax reduction. If the company later no longer qualifies as a mid-sized enterprise due to factors such as an increase in its size, but it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reverting to higher tax payments as outlined in the law (e.g., a de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es), then the provision allowing reduced tax payments can continue to apply for up to two years until the corporate tax for the subsequent two years, as long as the conditions for reduced tax payments are met during that period.) {r65<n>}
          15. [74](#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 8. 31)(#2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 8. 31)(#3 Standard-2020-Legal Interpretation Corporation-0181, August 31, 2020) [n]
              1. {1}(#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2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조세를 50% 또는 10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창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 감면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이어받아 남은 기간동안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3 If an individual business owner, who previously received a 50% or 100% tax reduction under the law for starting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ransitions to a corporate business owner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starting the individual business and meets the conditions specified by the law, they can continue to receive the tax reduction that they would have been eligible for if they had remained an individual business owner for the remaining period.) {r71<n>}
          16. [75](#1 서면-2019-법인-2005, 2020. 2. 27)(#2 서면-2019-법인-2005, 2020. 2. 27)(#3 Written Opinion-2019-Corporation-2005, February 27, 2020) [n]
              1. {1}(#1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 도시지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6.1.1.이후부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3 If a corporation had its headquarters in an urban area and engaged in wholesale business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then moved its headquarters to a regional area and added manufacturing as a business,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added manufacturing business is not considered eligible income for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rom the date of moving the headquarters to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r from January 1, 2016, whichever is later.){r72<n>}
          17. [76](#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 12. 24)(#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 12. 24)(#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pecial Taxation Division-751, December 24, 2019) [n]
              1. {1}(#1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2 2015년 중소기업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소기업에 해당하다가, 중소기업기준이 개정되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3 If a business qualified as a small business before the standards were revised in 2015 but no longer qualifies as a small business due to the revised standards, it will still be considered a small business until 2019.) {r67<n>}
          18. [77](#1 서면-2019-법인-1741, 2019. 9. 19)(#2 서면-2019-법인-1741, 2019. 9. 19)(#3 Written Opinion-2019-Corporation-1741, September 19, 2019) [n]
              1.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2 벤처기업이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간이 만료되는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세법에서 정한 감면기간 중 감면을 받지 못한 기간 내에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동안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금을 50% 또는 10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3 If a venture company receives tax reductions according to the law governing tax reductions or surcharges for the period in which it is confirmed as a venture company, it cannot receive the reduction starting from the year in which the venture company confirmation period expires. However, if the company obtains venture company confirmation again during the period specified in the tax law (for which it did not receive the reduction), it can still benefit from the tax reduction provisions for the remaining reduction period. This means that if a venture company is established during the remaining reduction period, it can receive a 50% or 100% reduction in taxes as specified in the law.) {r70<n>}
          19. [78](#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 5. 23)(#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 5. 23)(#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pecial Taxation Division-411, May 23, 2019) [n]
              1. {1}(#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금을 50% 또는 10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받지 않는 세액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Companies confirmed as venture enterprises, based on regulations that grant a 50% or 100% tax reduction according to the law governing tax reductions or surcharges for startup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ay receive a tax reduction on the originally reduced tax amount. In cases where they re-report the tax amount as non-reduced after being confirmed as venture enterprises, this tax reduction can be applied from the first taxable year in which income is generated after the date of confirmation as a venture enterprise (up to the year in which the date falls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as a venture enterprise) and for the following four years ending within the beginning date of the next year for income generated in the business during that period.) {n}
          20. [79](#1 조심 2018-서-1956, 2018. 6. 29)(#2 조심 2018-서-1956, 2018. 6. 29)(#3 Josim 2018-Seo-1956, June 29, 2018) [n]
              1. {1}(#1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님)(#2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인터넷홈페이지는 그 홈페이지를 인수한 법인의 사업에서 향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님)(#3 An internet homepage acquired from an individual business owner is considered an asset that can generate future value for the acquiring corporation. Since the corporation's business is publishing manuscripts based on the internet homepage, it is not considered as starting an entirely new business, even if there are some changes in the business content.){r60<n>}
      11. [80](#1 외국납부세액공제)(#2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3 A system that deducts taxes paid in foreign countries from taxes incurred in Korea) [n]
          1. [81](#1 서면-2021-국제세원-7318, 2022. 6. 27)(#2 서면-2021-국제세원-7318, 2022. 6. 27)(#3 Written Opinion-2021-International Tax Office-7318, June 27, 2022) [n]
             1. {1}(#1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2 국내의 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인식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국내의 법인이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할 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것임)(#3 Whe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iming of recognition of income between a domestic corporation and a foreign country regarding income earned abroad, the domestic corporation should subtract the foreign taxes paid from the corporate tax amount in the year that includes the income earned abroad when reporting taxable income in Korea.) {r83<n>,r84<n>}
          2. [82](#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2. 23)(#2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2. 23)(#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ternational Tax Division-98, February 23, 2022) [n]
             1. {1}(#1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λ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2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중 다음연도의 법인세에서 뺄 수 없는 것은 다음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함 λ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세 신고 시 빼주는 경우의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으로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과 본래 목적의 사업을 같이 운영할 때 하는 손익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3 Among the foreign corporate taxes paid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Law, the portion that cannot be subtracted in the following year is treated as an expense when calculating the taxable income for the following year.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ternational Tax Division-829, September 6, 2018. When subtracting foreign taxes paid when reporting corporate taxes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Act, the income earned abroad for that year is considered the amount treated as an expense when calculating taxable income. This subtraction is applicable when there is a direct or indirect correspondence between the income earned abroad and the amount. The indirect correspondence to income earned abroad is calculated using the profit and loss calculation method applied when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purposes other than pursuing economic gain, operates both profit-generating and its original purpose activities simultaneously.) {n}
          3. [83](#1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 10. 25)(#2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 10. 25)(#3 Written Opinion-2016-Legislation Interpretation Basic-4902, October 25, 2016) [n]
             1. {1}(#1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2 국세청이 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고쳐서 더 큰 세액으로 고지함에 따라 국내의 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연도의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빼주어야 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이 증가한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뜻으로 세금을 낮게 부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3 If the National Tax Service revises the tax amount reported by a corporation to a higher amount, and as a result, the income earned abroad by the domestic corporation increases, the domestic corporation can request a lower tax assessment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considering the increased income earned abroad. The request is made on the grounds that the tax assess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is excessive.) {r81<n>,r84<n>}
          4. [8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 10. 1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 10. 14)(#3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International Tax Division-371, October 14, 2014) [n]
             1. {1}(#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2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의 세금을 신고할 때 빼주는 것은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의 세금에 관해 맺은 조약 및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3 The subtraction of taxes paid in a foreign country when declaring domestic taxes is applied based on the tax amount appropriately paid according to the treaties and tax laws of the country where the income was generated.){r81<n>,r83<n>}
      12. [85](#1 미환류소득)(#2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지출하지 않은 금액)(#3 The amount of profit a company has earned but has not spent) [n]
          1. [86](#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ation-333, August 24, 2022) [T,r87<n>,r89<n>]
             1.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2 =다른 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된 법인에 있던 누적 손실액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는데, 인수한 연도 이후 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3 =Whether the corporate entity that acquired another company can continue to deduct the accumulated loss amount present in the acquired entity when calculating the unexpended portion of profits earned by the company in the years following the year of acquisition.) {n}
             2. {2}(#1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2 =(1안) 매년마다 누적손실액 차감 가능)(#3 =(Option 1) Deduction of accumulated loss amount allowed every year.) {n}
             3. {3}(#1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2 =(2안) 매년마다 누적손실액 차감 불가능)(#3 =(Option 2) Deduction of accumulated loss amount not allowed every year.){n}
             4. {4}(#1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2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3 =In this case, option 2 is appropriate.) {n}
          2. [87](#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 8. 23)(#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 8. 23)(#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ation-328, August 23, 2022) [n]
             1. {1}(#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 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 적립급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2 국내 법인이 다른 국내 법인을 2020년도 중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된 법인이 2019년도에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하려고 남겨놓은 이익이 있는 경우 2020년도로 넘어온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할 이익은 인수한 법인이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3 In the case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acquires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in the year 2020, and the acquired corporation had retained profits for use in the years after 2019, the acquired corporation can use these profits for the years after 2020 for the intended purpose.) {r86<n>}
          3. [88](#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 8. 22)(#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 8. 22)(#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ax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924, August 22, 2022) [n]
             1. {1}(#1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2 국내의 법인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할 때 지출한 금액에 투자금액을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방법을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금액을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calculates the amount of unspent profits earned by a company and includes investment amounts in the calculation, it must apply this method for three years. If it chooses to continue applying the method, including investment amounts until the year that falls on the 4th or 5th year, it can choose to exclude investment amounts in the subsequent fiscal year.) {r61<n>,r89<n>}
          4. [89](#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 8. 1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 8. 19)(#3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rporate Taxation-374, August 19, 2021) [n]
             1. {1}(#1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2 다른 기업을 인수한 법인의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지출하지 않은 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인수된 법인에 있던 누적 손실액은 인수된 법인의 10년 이내에 발생한 누적 손실액으로서 인수된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빼지 아니한 금액임)(#3 The accumulated loss amount in the acquired corporation, which is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unexpended portion of profits earned by the acquiring corporation after acquiring another company, is the accumulated loss amount incurred within the last 10 years by the acquired corporation. This amount is not subtracted when calculating the taxable income of the acquired corporation.){r86<n>}

<boe>